

보도자료

2010년 7월 29일(목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(☎750-2270)
주파수정책과 오형근 서기관(☎750-2271) philos@kcc.go.kr**WiBro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****- '10. 8월초 할당공고, '10. 11월초까지 할당신청 접수 -**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7. 29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.5GHz대역 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였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금일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8월초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며,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할당신청을 하면 주파수할당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중에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.

금일 의결된 할당계획(안)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◆ **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** = 2.5GHz대역 40MHz폭(2580~2620MHz)을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한다.
- ◆ **이용기간** = 기존 WiBro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.

- ◆ 기술방식 = 3G WiBro 방식 또는 진화된 4G WiBro 방식으로 한다.
- ◆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 =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'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' 방법을 적용하며,

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%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%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.

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(확정)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(추정)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.
- ◆ 심사기준 = 지난 800/900MHz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(50점), 재정적 능력(25점), 기술적 능력(25점)으로 심사한다.
- ◆ 할당신청 및 사업자 선정 =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 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,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.
- ◆ 할당시기 =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,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한다.

붙임 : 1. 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할당공고
2. 주파수할당절차. 끝.

[붙임 1]

©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0 - xx 호

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 할당 공고

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.5GHz대역 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x월 x일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: : 2580~2620MHz, 40MHz폭

2. 할당방법 및 시기

가. 할당방법 :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“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” 방법을 적용함

나. 할당시기 :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

3.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

가.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: 211억원

※ 신청법인은 전파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보증금을 할당신청시 납부하여야 함

나.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

- o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-x호(‘10.x.xx)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

4. 주파수 이용기간 :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7년으로 함

5.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

가. 주파수용도 : 휴대인터넷(WiBro) 서비스 제공용

나. 기술방식 : ITU에서 정한 IMT-2000 기술 중 OFDMA WMAN TDD(WiBro) 방식 또는 이후의 진화된 기술방식 (3세대 WiBro 또는 4세대 WiBro 방식을 말함)

6.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

o 전파법 제13조(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

7. 할당 조건

o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 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

8.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

o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,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함

9. 주파수할당 신청

o 신청기간 : 할당공고일부터 3월

주파수 할당절차

※ 주파수 할당절차는 할당공고, 할당신청, 참여 자격 심사, 할당 심사, 초기 할당대가 납부, 주파수 할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

주파수 할당공고

①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, ② 할당방법 및 시기 ③ 할당대가, ④ 주파수이용기간, ⑤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, ⑥ 신청자의 범위 ⑦ 기타 할당에 필요한 사항 등 공고



주파수 할당신청

【신청서류】

① 할당신청서, ② 법인 정관, ③ 주식소유 관련서류, ④ 주파수이용 계획서, ⑤ 기타 할당공고시 정하는 서류



할당자격 심사

①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,
② 전파법상 할당 결격사유 해당여부



주파수 할당심사

【심사기준】

①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, ②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, ③ 재정적 능력, ④ 기술적 능력, ⑤ 할당하려는 주파수 특성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



초기 할당대가 납부

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1/2을 일시 납부

※ 신규사업자는 주파수 할당과 별도로 사업허가를 받아야 함



주파수 할당

할당심사 고득점자에게 할당